





[별지 제82호서식 (1) 부표]

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													
① 성 명				② 주민등록번호						-			
③ 일련번호				1	2			3			4		
④ 상 호										계			
⑤ 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
⑥ 과 세 기 간				-	-			-					
총수입금액	⑦ 매출액												
	⑧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												
	⑨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할 금액												
	⑩ 계 (⑦ + ⑧ - ⑨)												
매출원가	⑪ 기초재고액												
	⑫ 당기매입액 (당기제품제조원가)												
	⑬ 기말재고액												
	⑭ 매출원가 (⑪ + ⑫ - ⑬)												
기 타 필 요 경 비	인건비		⑮ 인 원										
			⑯ 금 액										
	⑰ 임 차 료												
	⑱ 제 세 공 과 금												
	⑲ 지 급 이 자												
기 타 비 용	⑳ 감가상각비												
	㉑ 접 대 비												
	㉒												
	㉓ 기 타												
㉔ 계 (㉑+㉒+㉓)													
㉕ 기타 필요경비 계 (⑯+⑰+⑱+⑲+㉔)													

## 작 성 요 령

1.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,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를 첨부합니다.
2. ⑦란 매출액은 제품·상품등의 판매액을 기입합니다.
3. ⑧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금액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, 판매장려금, 관세환급금, 국가보조금, 보험차익,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등을 기입합니다.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4. ⑪란, ⑫란 및 ⑬란에는 기초재고액, 당기매입액 및 기말재고액을 각각 기입합니다. 이 경우 ⑪란의 기초재고액은 전기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, ⑬란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기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. 또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 금액을 모두 당기매입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, 이 때에는 다음기의 매출원가계산에 있어서 기초재고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5. ⑱란 제세공과금은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, 상공회의소회비, 조합비 또는 협회비등을 기입합니다.
6. ⑤란 사업자등록번호·⑥란 과세기간·⑩란 총수입금액계·⑭란 매출원가·⑮란 기타필요경비계를 간이소득계산서(1)의 ④사업자등록번호란·⑤과세기간란·⑦총수입금액란·⑧매출원가란·⑨기타필요경비란에 일련번호 1, 2, 3, 4 순서대로 이기합니다.
7. 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 $(2,400\text{만원} \times \frac{\text{과세기간월수}}{12})$ 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8. 지정기부금, 감가상각비, 대손충당금, 퇴직급여충당금, 특별수선충당금, 국고보조금, 보험차익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